

동북아 지역의 FTA체결을
위한 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 중국, 일본의 에너지 부문

최성희 책임연구원

2006.4.28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FTA 개념 및 적용범위
3. 한중일 FTA 추진 현황 및 에너지 FTA 가능성
4. 한중일 에너지 수급, 교역, 투자현황 (석탄, 석유, 가스)
5. 한중일 에너지 FTA 추진 시 대두될 관련 제도 사안
6. 사례연구를 통한 에너지 관련 제도 조정 가능성
7. 종합평가 및 시사점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 한중일 FTA 가능성 대두

- 지역적 인접, 거대경제규모,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 에너지 FTA 가능성 체크: 동북아의 급속한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른 역내 에너지 안보문제 이슈화

➤ 에너지 FTA 체결을 위한 제도조정 과제와 방안

- 만약 에너지 FTA가 추진될 경우 어떠한 제도조정과정이 거쳐질 것인가?
- 에너지 산업은 국가안보와 결부되는 기간산업으로, 산업보호를 위한 규제와 제도 존재
- 한중일 각국의 에너지 산업의 규제와 제도를 비교분석 → FTA 체결 시 대두될 제도상 conflict resolution 가능성 판단

FTA란 무엇인가?

-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ssociation)은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형태
-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는 협정형태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 관세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超국가적 기구 설치 운영
FTA (ex.NAFTA)					
관세동맹 (ex.베네룩스 관세동맹)					
공동시장 (ex. EEC, CACM)					
완전경제통 합(ex.Post- Masstricht EU)					

최근 FTA 협정범위 및 적용추세

- 최근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임.
 -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
-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며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
 -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넓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

최혜국대우와 WTO 규범과의 관계 (1)

-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사실상 정면으로 배치
- 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 (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 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 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 특정한 분야 전면적 제외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최혜국대우와 WTO 규범과의 관계 (2)

-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
-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한중일 FTA 추진현황

구분	체결완료	협상 중	검토 중
한국	칠레 (02), 싱가포르 (04), EFTA (05)	일본 (03), ASEAN (05), 캐나다(05)	멕시코, 인도, MERC OSUR, <u>한·중·일</u> , 중국
중국	홍콩 (03), 마카오 (03), ASEAN (04)	뉴질랜드(04), 칠레 (05), 파키스탄 (05), GCC (05), 호주(05)	인도, 일본, MERCOSUR, <u>한·중·일</u> , 한국, 멕시코, 아이슬란드, 태국, 남아공
일본	싱가포르 (02), 멕시코 (04), 필리핀 (04), 말레이시아 (05), 태국(05)	한국(03), ASEAN (05), 인도네시아 (05)	칠레, 인도, 호주, 중국, <u>한·중·일</u> , 남아공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한중일 FTA 추진 계획 및 방향

구분	추진 계획 및 방향
한국	- 경제구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대경제권 및 경제선진국과의 FTA 추진 -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괄하는 FTA 추진 -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한 불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이고 적극적인 FTA 추진
중국	-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FTA 추진 - <u>지속적 경제성장의 원동력 확보차원에서 에너지 및 자원선점을 우선시하는 FTA 추진</u> -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닌, 국제정치적·안보적 측면 중시하는 FTA 추진
일본	- 장기간의 경제침체에 대한 돌파구와 중국경제에 대한 대응책 - 전체적인 협상전략을 위한 “FTA 추진의 기본방침” 수립 -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고 일본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단계로서 FTA 추진

한중일 에너지 FTA??

- 최근의 한중일 FTA 추진 현황과 기본정책방향을 분석해 본 결과, NAFTA의 경우처럼 에너지 자원 수출국과 수입국간을 연결하는 FTA 추진 가능성은 낮음.
 - ☞ 수출 공산품 위주의 FTA로 추진하되, 에너지 교역 및 투자활성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 한중일 에너지 부문의 최근 교역 및 투자현황을 파악하여 FTA 추진 여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규제 및 제도현황을 알아보고자 함.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2. 한중일 주요 자원 매장량 (2004년 현재)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석 탄 (톤)	80	114,500	359
원 유 (배럴)	—	18,250,000	58,500
가 스 (입방피트)	—	53,325	1,400

자료: EIA County Analysis Brief (2004)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3. 한중일 주요 자원 수급상황 (1): 생산량

년도	한 국			중 국			일 본		
	석탄	원유	가스	석탄	원유	가스	석탄	원유	가스
1996	2.2	—	—	691.5	3170	19.9	3.6	—	—
1997	2	—	—	665.5	3211	22.2	2.4	—	—
1998	2	—	—	619.7	3212	22.3	2	—	—
1999	1.9	—	—	523.9	3213	24.3	2.2	—	—
2000	1.9	—	—	501.8	3252	27.2	1.7	—	—
2001	1.7	—	—	555.1	3306	30.3	1.8	—	—
2002	1.5	—	—	713.4	3346	31.9	0.8	—	—
2003	1.5	—	—	873.4	3401	34.4	0.7	—	—
2004	1.4	—	—	989.8	3490	40.8	0.7	—	—

자료: BF Statistical Review (2005)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3. 한중일 주요 자원 수급상황 (2): 소비량

년도	한 국			중 국			일 본		
	석탄	원유	가스	석탄	원유	가스	석탄	원유	가스
1996	32.2	2144	13.5	681.6	3672	17.7	88.3	5813	66.1
1997	34.8	2373	16.4	681.7	3935	19.3	89.8	5762	65.1
1998	36.1	2030	15.4	608.3	4047	19.3	88.4	5525	69.5
1999	38.2	2178	18.7	492.3	4416	21.4	91.5	5618	74.6
2000	43	2229	21	455	4985	24.5	98.9	5577	76.2
2001	45.7	2235	23.1	517.7	5030	27.8	103	5435	79
2002	49.1	2282	25.7	693.4	5379	29.6	106.6	5359	71.9
2003	51.1	2300	26.9	834.7	5791	32.8	112.2	5455	76.5
2004	53.1	2280	31.6	956.9	6684	39	120.8	5288	72.2

자료: BF Statistical Review (2005)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4. 한국의 對日 주요 에너지 수출액 (U.S. Dollar)

년도	석탄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총액	총상품	비중
1998	2	-	1,178,087	-	1,178,089	12,237,587	9.63%
1999	-	-	2,070,979	-	2,070,979	15,862,448	13.06%
2000	11	-	3,663,451	5	3,663,467	20,466,016	17.90%
2001	26	-	3,118,818	19	3,118,863	16,505,766	18.90%
2002	3	-	2,386,941	13	2,386,957	15,143,183	15.76%
2003	4	-	2,614,889	8	2,614,901	17,276,137	15.14%
2004	1,352	-	3,337,493	28	3,338,873	21,701,337	15.39%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4. 한국의 對日 주요 에너지 수입액 (U.S. Dollar)

년도	석탄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총액	총상품	비중
1998	8,655	12,853	100,780	—	122,288	16,840,409	0.37%
1999	8,721	14,893	198,562	—	222,176	24,141,990	0.92%
2000	7,392	—	239,749	—	247,141	31,827,943	0.78%
2001	4,893	—	347,057	1	351,951	26,633,372	1.32%
2002	6,220	—	400,202	—	406,422	29,856,228	1.36%
2003	8,157	2	266,218	—	274,377	36,313,091	0.76%
2004	36,285	—	347,775	1	384,061	46,144,463	0.83%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4. 한국의 對中 주요 에너지 수출액 (U.S. Dollar)

년도	석탄	원유	석유제품	총액	총상품	비중
1998	135	—	1,063,970	1,064,105	11,943,990	8.91%
1999	65	—	1,176,112	1,176,177	13,684,599	8.59%
2000	—	—	1,718,320	1,718,320	18,454,540	9.31%
2001	8	—	1,585,613	1,585,621	18,190,190	8.72%
2002	4	—	1,050,649	1,050,653	23,753,586	4.42%
2003	9	—	1,579,999	1,580,008	35,109,715	4.50%
2004	111	—	2,471,841	2,471,952	49,763,175	4.97%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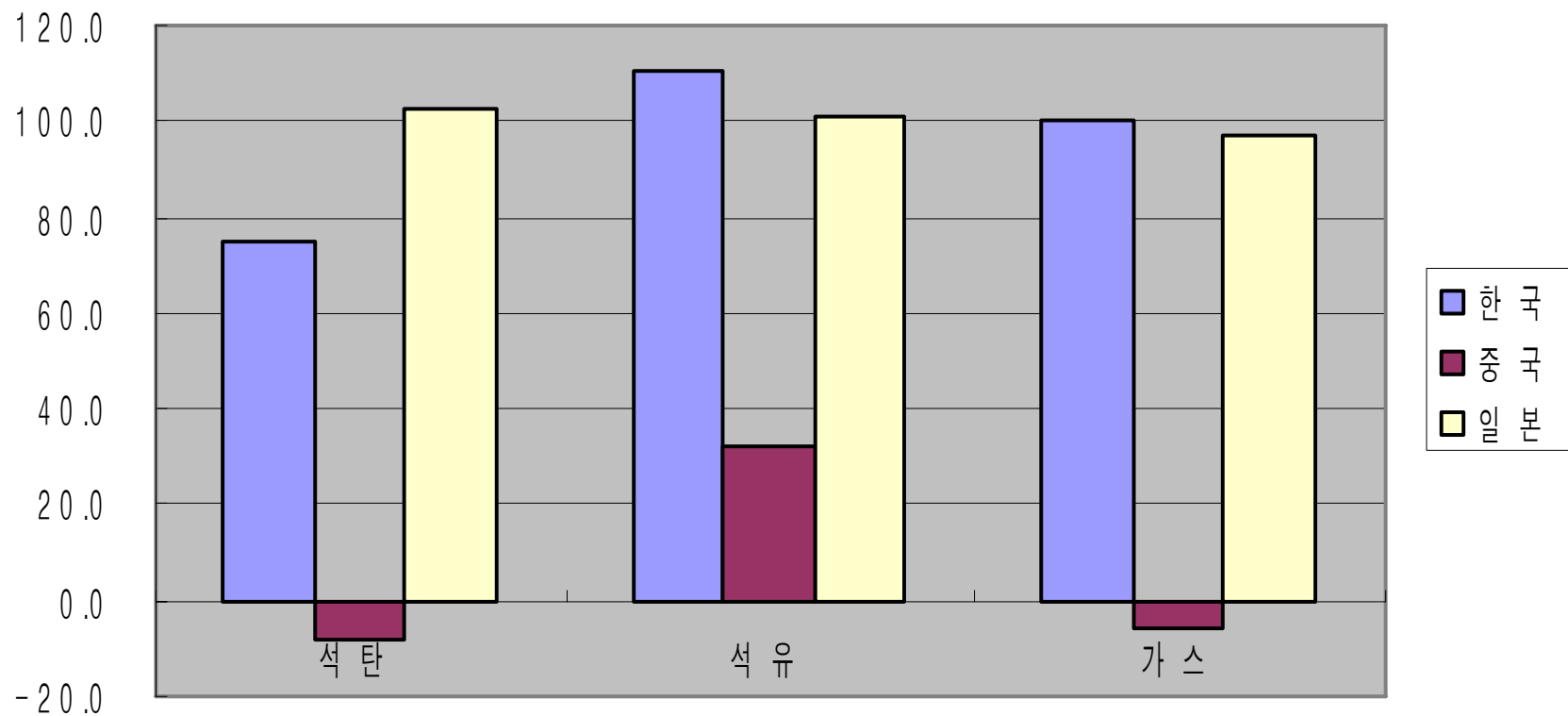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4. 한국의 對中 주요 에너지 수입액 (U.S. Dollar)

년도	석탄	원유	석유제품	총액	총상품	비중
1998	325,605	321,799	75,244	713,648	6,483,958	11.01%
1999	468,212	61,147	161,966	691,325	8,866,667	7.80%
2000	717,290	109,346	309,981	1,136,617	12,798,728	8.88%
2001	904,441	47,007	324,291	1,275,739	13,302,675	9.59%
2002	928,118	97,106	436,392	1,461,616	17,399,779	8.40%
2003	1,003,547	208,265	387,343	1,599,155	21,909,127	7.30%
2004	1,556,832	298,723	216,498	2,072,053	29,584,874	7.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중일 에너지 대외의존도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 한국의 對中國 및 對日本 에너지 교역 특징 (1)

➤ 對中 석유제품 수출액 증가 (1998 - 2004)

- 중국의 공업화 / 경제화에 따른 석유정제품 수요 증가
- 2003년 한국의 수출대상국 1위
- 총상품 수출액 중 석유제품의 비중율은 감소 (주요 공산품의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더욱 급증)

➤ 對日 석유제품 수출액 증가 (1998 - 2004)

- 일본의 경제구조 선진화: 자원 및 노동집약적인 제품 수입구조
- 중국과 비교할 시 수출액 뿐만 아니라 수출액증가율도 높음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 한국의 對中國 및 對日本 에너지 교역 특징 (2)

➤ 對中國 석탄 수입액 증가 (1998 – 2004)

- 98년 경제위기 회복 이후 발전 및 철강수요증가분을 중국의 수입으로 충족: 상대적으로 수송비가 비싼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 수입량을 대체함.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 한중일 RCA 지수 비교: 석유제품 및 석탄

	한국	중국	일본
1998	0.80	1.20	0.20
2004	1.33	0.65	0.08

- RCA 지수: $(X_{ik} / X_i) / (TX_k / TX)$,
X_{ik}: “i” 국가의 “k” 상품 수출액,
X_i: “i” 국가의 총수출액,
TX_k: 세계 전체의 k 상품 수출(입)액
TX: 세계전체 수출(입)액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4. 한국과 中·日과의 원유 공동 개발 투자 현황

협력 국가	개발지역	광구명	참여주제		비고
			국내 참여사 및 지분구조	해외참여사 및 지분구조	
중국	중국	마황산서 서부탐사 광구	석유공사(30.8%) 삼성물산(30.8%)	난천물자공사 (8.4%) Sinopec NCC (30%)	1997년 KSLOC 설립(중외합 작법인)하여 Sinopec과 99 년에 공동석유개발계약 체결
	인도네시아	Bang Ko 광구	SK 주식회사 (25%)	Petro China(75%)	95년도에 시작되었으며 2005년 2월부터 원유생산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생산량은 300 bbl daily 정도임.
일본	한일대륙붕 지역		한국석유공사 (50%)	일본공동지분(50%) -Japan Petroleum Exploration Co., Ltd -Cosmo Energy Exploration&Develo Pment Ltd -Japan Energy Deyeloment Co., Ltd -Teiloku Oil Co., Ltd	○ 2004년 9월 합의서 체결 ○ 합의서 주요내용 -한일당사자 공동으로 공동 연구 수행 -협의를 거쳐 조광원 출원 여부 결정

4. 한국과 중국의 가스 공동 개발 투자 현황

	개발 지역	사업명	참여주체		비고
			국내	해외	
중국	러시아	이츠쿠츠크 사업 북방 코빅틴스크 가스전	한국가스공사 를 대표로 하 는 컨소시엄	CNPC(중국국 영석유공사) Russia Petroleum	○도입예상물량(30년간) -한국 700만 톤/1년 -중국 1,400만 톤/1년 ○투자규모 -110억불 (한,러,중 배관시설규모) ○현황 -2003년 3국 주체는 공동 타 당성 조사 후 각국에 승인 신 청하였으나 최근 러시아의 정책 변경으로 러시아정부 승인 유보 중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 한중일 에너지 FTA 가능성 및 관련 제도

➤ 석유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FTA

- 교역 증가를 위한 관세인하 문제

➤ 에너지 자원 탐사, 개발, 유통 관련 에너지서비스 FTA

- WTO의 양허안을 기반으로 한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 문제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한중일 주요 에너지 관세 (출처: APERC 및 WTO)

- 일본 (WTO 관세)
 - 석탄으로부터 제조된 연탄 / 고체연료: 4.6% (3.9%)
 - 석유 또는 유연탄으로 채취된 유류 (ex. 등유): 3% (2.5%)
 - 석유가스
 - 액화상태 천연가스, 프로판, 부탄: 0%
 - 기체상태 천연가스: 5% (WTO 4.1%)
- 일본에 비해 한국이 그리고 중국이 관세가 높음

	한국	중국	일본
평균실행 관세율	7.0%	11.3%	2.7%

FTA 추진시 언급될 관세 인하

- 관세인하를 통한 에너지 교역증진에 대한 이견은 없음.
- 관세수준을 WTO수준인 일본관세수준으로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로 한국수준 이후 일본수준으로 전개해 나갈것인지가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것임.
 - 한-칠레 FTA: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단계별이 아닌 즉시철폐
- 또한, 최근 중국이 관세와는 별도로 최근 석탄에 대한 수출 쿼터 제한을 통해 한국 및 일본으로의 석탄outflow를 억제
- 따라서 협상 시 관세이외의 교역장벽 (수출입 쿼터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에너지 서비스 부문: (1) 한국

<표> GATS의 에너지관련 한국의 양허표			
부문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1.F	h. 광업관련 서비스	1) 양허하지 않음 2) 양허하지 않음 3) 양허하지 않음 4) 전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j. 에너지 유통 서비스	양허하지 않음	양허하지 않음
11. G. a. 연료의 수송		양허하지 않음	양허하지 않음

- Mode1: 국경간 공급 (서비스자체가 외국이동: ex. 전력국제송전망, 국제파이프라인 공급 등)
- Mode2: 해외소비 (서비스 소비자가 외국이동)
- Mode3: 상업적주재 (회사설립 후 서비스 공급)
- Mode4: 자연인이동 (특정인력이 수입국으로 이동 후 서비스 공급)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에너지 서비스 부문: (2) 중국

<표> GATS의 에너지관련 중국의 양허표			
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제한
1. F	해양유전 서비스	1) 없음 2) 없음 3) 석유 부문에서 국내 파트너와 합작일 경우로 제한 4) 전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 외는 양허하지 않음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양허하지 않음
	육지유전 서비스	1) 없음 2) 없음 3) 중국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CNPC와 함께 석유 탐사의 경우로 제한 4) 전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1) 없음 2) 없음 3) 외국서비스공급자는 석유운영 에 관한 자료, 견본뿐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CNPC에 제공 하고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의 소유권은 CNPC가 가지며 투자 는 미국의 달러나 경화로 투자 4) 전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양허하지 않음
	j. 에너지 유통 서비스	공약하지 않음	공약하지 않음
11. G. a. 연료의 수송		공약하지 않음	공약하지 않음

에너지 서비스 부문: (3) 일본

<표> GATS의 에너지관련 일본의 양허표

부문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1.F	h. 광업관련 서비스	양허하지 않음	양허하지 않음
	j. 에너지 유통 서비스	양허하지 않음	양허하지 않음
11. G. a. 연료의 수송		양허하지 않음	양허하지 않음

FTA 체결시 구체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양허 요구 사항

- DDA 양허안을 감안할 경우 한국은 일본보다 중국에게 에너지 분야에서 양허안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자원의 개발과 유통부문에 진출하고자 주로 자원보유국에게 양허안을 신청하기 때문.
- 사실, DDA 경우 한국은 중국에게 양허안을 신청하였으며, FTA 체결시 이를 기반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참조)

FTA 추진시 에너지 서비스 협상

- 한중일 모두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개선하여 개방화와 자유화를 실현하는 목적에는 이견이 없을 것임.
- 그러나 서비스 분야의 규제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방정도와 시기에 대하여 쉽지않은 협상이 될것으로 생각
- 우리나라는 에너지원별 차이 인정여부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왜냐하면,
 - 석유분야은 개방이 높은 반면, 전력과 가스분야는 일부 미개방분야가 존재 (전력산업은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가스산업도 구조개편 추진 계획 중)하므로 개방 일정을 원별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

❖ 한중일 에너지 FTA를 위한 제도 정비

사례연구를 통한 에너지FTA 제도조정 가능안

- 한-칠레 FTA 및 한-EFTA 경우도 에너지부문은 유보사안으로 별도 처리 되었음 (첨부파일 참조)
- 국가안보와 결부된 산업이라는 이유가 FTA 체결 시 유보사안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에너지 FTA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기에 농업분야와 같이 FTA 체결시 어려운 협상의제가 될 것임은 분명함.
- 특히 에너지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의 개념이 세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생산/건설 등 타부문과의 구분이 모호함으로 에너지원별 및 세부서비스별 분류기준의 개념 정립이 선결과제임.
- 향후 에너지 FTA를 위한 우리의 대응은 국내의 에너지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우리의 계획과 필요에 의해 제반여건이 성숙된 위에 순차적으로 개방되도록 재량권 확보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하며,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The End
Thank You!!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